

청소년단체별 가입 학생 수	가산점부여 지도교사 수	비 고
20명 ~ 60명 (단, 6학급이하 학교 10명 ~ 60명)	1명	
61명 ~ 100명	2명	
101명 이상	3명	

- 가산점 부여 별도 대상자 및 인원수

학교 외의 청소년단체별 조직기구에서 활동하는 지도교사 중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청소년단체 가입 지도교사 수의 3% 이내

아. 승진가산점부여 대상 지도교사의 활동 인정기준

- 소속학교 및 해당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실적이 연간 50시간 이상인 자
(단, 1일당 8시간으로 계산하고 월 8시간까지 인정하며,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 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지역별 행사 및 도 단위(중앙 포함)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석한 실적이 있는 자

자. 가산점 내용 : 지도활동 2년차부터 1월마다 0.006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2점)

(※ 2007.12.31.이전 경력까지는 1월마다 0.009점씩 가산(1개월 미만은 일 0.0003점))

차. 제출서류 : 청소년단체장 발행 청소년단체활동 승진가산점 부여 확인서

15.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 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 중 현 근무교와 다른 급 학교교원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단, '98.01.01. 이후 취득한 가산점은 전직된 경우에도 인정함)

16. 타 시·도에서 전입한 교사 중 타 시·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경기도 가산점 평정 항목과 부여취지가 일치하는 항목만 경기도 평정점에 준하여 인정한다.(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해당 가산점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17. 가산점 초과 제한의 범위

가.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 농·어촌, 접경, 공단지역 학교 근무경력, 특성화고등학교 근무 경력, 고등학교 근무경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1.5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지정 연구학교(시범학교, 실험학교 포함)근무경력 가산점과 교육감 지정 선도학교, 중심학교 및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육성교, 과학교육선도학교 유공교원 가산점은 합산하여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도·농교류체험학습 유공교원 가산점은 2006.01.01. 이후 경력은 불인정)

다. 순회교사, 파견교사 및 겸임교사 근무경력, 경기도공동실습소 운영교사 근무경력과 전국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육대회 시·도대표 지도경력,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경력,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대표 지도경력, 발명교실(2009.03.01. 이후), 영재교육 담당교사,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국제 올림피아드(수학, 물리, 화학, 생물, 환경, 정보)에 한국대표로 선발된 학생의 지도교사 경력(2003.01.01. 이후)에 대한 가산점은 담임경력 가산점과 동일하게 평정하되, 담임가산점과 합산하여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